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24
----------	-----------

제출연월일	2006. 4. 1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함(안 제2조).
- 다.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마. 이주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표준안 : 도 농업정책과-1774(2006. 2. 13)

- 나. 예산조치 : 12,000천원(도비 30%) 확보

다.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입법예고(2006. 3. 21~ 4. 10)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거주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창군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거주 미혼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1, 2호서식을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거주 미혼남성에 해당하는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청구가 있을시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m ²	m ²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년, 월)				
주택보유	자가(), 전세(), 월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비고	
<p>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결혼 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인)</p> <p>거창군수 귀하</p>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 부	담 당 직) 공무원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 부모와 동거할 경우 영농규모, 주택보유 현황은 부모의 현황을 기재
주민등록 등본, 농지원부 사본 읍면에서 첨부

붙임 : 인우보증서 1부.

